

**평창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조례
전부개정조례안**

제출자 : 평 창 군 수

평창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39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2. 4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- 보건진료원의 신분전환(별정직 ⇒ 일반직)으로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「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」이 폐지됨에 따라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운영협의회 정관 개정(안 제3조)
- 나. 운영협의회의 기능 및 기구, 임원을 두는 사항을 규정(안 제4조~제6조)
- 다. 운영협의회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7조)
- 라. 운영협의회 위원 수당지급 규정 신설(안 제8조)
- 마. 운영협의회 사무장 및 업무수탁 관련 조항 삭제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발취 : 별첨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
- 다. 관계부서승인 : 해당없음
- 라. 입법예고 : 2012. 3. 16 ~ 4. 6(21일간), 제출의견 없음
- 마.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
평창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평창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설치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1조에 따라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① 평창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.

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평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)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.

제3조(정관)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.

1. 명칭
2. 사업에 관한 사항
3. 회원의 권리·의무에 관한 사항
4.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
5.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·감사에 관한 사항
6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
7. 임원에 관한 사항

8.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

제4조(협의회의 기능) ① 협의회는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

2.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

3.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

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.

1.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·개축 건의

2.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

3.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을 받기위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5조(기구) 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.

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운영위원회의 소집과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.

제6조(임원)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

1. 회장 1명

2. 부회장 1명

3. 운영위원 15명 이내

4. 감사 1명

② 회장, 부회장,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.

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
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.

제7조(위원의 위촉 해제)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.

1.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
2.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
3.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

제8조(수당 등) 군수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.

제9조(재정) ① 협의회 재정은 회원의 회비,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.

② 협의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제8조(수당 등) 군수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.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이 조례 개정으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됨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채정희
연락처	(033) 330 - 4820

관계법령 발췌

□ 농어촌 등 보건의를 위한 특별조치법

제21조(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) ①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둔다.

②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행한다.

1.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
2.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

③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